

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세계 5대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, 대·중견기업과의 기술협업 및 주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2017년 2월부터 「서울창업허브 공덕」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서울창업허브 공덕
소재지	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
시설규모	연면적 24,142㎡(본관 지상10층 18,490/ 별관 지상4층 5,692)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입주공간, 보육 특화공간, 공유공간 등)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3.1.1.~2025.12.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6,091백만원('22년 예산)

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○ 추진경위

- 2016. 6. : 제26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17. 2. :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
- 2020. 1. : 제298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- 2022. 6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- 2022. 7. :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(동의)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허브는 국내외 대기업 및 협력 기관 등과 함께 유망 창업 기업의 사업화,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, 판로개척 등 창업 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
- 특히 기술창업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이 필요함

-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
 -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 선발 및 보육지원
 - 핵심 및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특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
- 대·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
 - 혁신기술 매칭, 투자유치, 판로개척 등 성장 촉진 지원
- 해외시장 검증 및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
 - 혁신기술 수요발굴 및 기술실증, 현지화 지원 및 해외거점 확보
- 서울 온라인 창업생태계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
- 국내외 주요 도시별 창업생태계 분석 및 우수 창업정책 연구
- 서울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, 사업성과 등 국내외 홍보
- 서울창업허브 공덕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 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 -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-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 7. 20.)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정책과 창업정책팀 김경진 (☎ 2133-4751)

이재현 (☎ 2133-4755)